



보도시점 2026. 4. 27.(월) 11:00  
4. 28.(화) 조간

배포 2026. 4. 27.(월) 09:00

## 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 겪는 식품업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실시

-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로 협업체계 구축, '맞춤형 조건부 유예'로 업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Naphtha) 공급 부족으로 인해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시장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해수부뿐만 아니라 농관원, 수품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하여 유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였다.

\* (농식품부) 계획 수립, 심사승인 담당 / (농관원·수품원) 유예 신청승인 업체 현장 점검 / (식품산업협회·aT) 회원사 및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 신청 수요 취합, 제도 안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의 적용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이며, 일괄적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신청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 협회 회원사의 경우는 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기획팀), ▲ 비회원사의 경우는 농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 ▲ 국산 비축콩 공급업체의 경우는 aT(전략작물육성단)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유예 기간은 제출된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와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등을 심사하여 실제 소진에 필요한 적정 기간(최대 6개월 이내)을 업체별 유예기간으로 확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단속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대체 안내 조치를 해야 하며,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부착은 지양하고 디지털/온라인 중심으로 원산지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공지, 대형 유통매장 내 전자 안내판(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활용

아울러, 승인된 유예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신규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이번 대책이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원산지 단속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투입하여 철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붙임 1.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관계기관 설명회 사진(추후 별송) 1부.
-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Q&A 1부.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	책임자	과 장	오재준	(044-201-2971)
		담당자	사무관	안진미	(044-201-2276)

**붙임 1**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관련 관계기관 설명회 사진**



**< 신청서 접수처 >**

- ① 농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7, zigu@korea.kr
- ②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전략작물육성단): 061-931-0772, wheat\_soy@at.or.kr
- ③ 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기획팀): 02-3470-8129, yeop8393@kfia.or.kr

**1. 신청 대상 및 접수 절차 부문**

**Q1. 관련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영세 업체는 신청 절차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협회 미가입 업체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트랙' 접수 방식을 운영합니다. 소속 회원사는 각 협회를 통해 일괄 신청하시면 되며, 비회원사는 농림축산식품부(또는 관련 기관)가 개설한 전용 이메일 창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 모든 업체에 동등한 기회가 부여됩니다.

**Q2. 단속 유예를 신청하면 모든 업체가 일괄적으로 6개월의 유예를 보장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본 제도는 '일괄 6개월 부여'가 아닌 '업체별 맞춤형 유예 기간 설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하신 포장재 재고 증빙 서류와 과거 월평균 소요량 데이터를 심사하여, 실제 잔여 재고가 소진되는 데 필요한 적정 기간(최대 6개월 이내)만을 차등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2. 소비자 안내 및 보완 조치 (디지털 대체) 부문**

**Q3. 유예 승인 시 소비자를 위해 매장에 원산지 변경 종이 안내문 등을 붙여야 하나요?**

A. 이번 조치의 근본적 배경은 나프타 부족 등에 따른 포장재 원료 수급난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합성수지나 종이로 소모되는 오프라인 안내문 제작은 지양합니다. 대신,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최상단 공지, 대형 유통매장 내 디지털 사이니지(전자 안내판) 등을 활용한 '디지털/비대면 안내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Q4. 오프라인 소규모 매장에만 주로 납품하는 업체라 디지털 안내 매체 활용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하나요?**

A. 자사 웹사이트나 앱이 없는 경우, 거래처(소매점)의 결제 포스(POS)기 화면을 통한 고객 안내 표출,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 영수증 내 원산지 변경 문구 삽입, 또는 거래처 발주 시스템망 내 공지 등 물리적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 창의적인 디지털 대체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심사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3. 사후 관리 및 제재 부문

**Q5. 서류상으로만 재고량을 부풀려 제출하고 부당하게 유예를 받는 악용 사례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A. 서면 심사와 병행하여, 원산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무작위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출된 서류상의 재고량과 실제 창고 내 포장재 적재량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교차 검증합니다. 만약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으로 유예 승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Q6. 유예기간(예: 4개월)을 부여받았는데, 2개월 만에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새 포장재가 납품되었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은 기존 포장재를 마저 소진해도 되나요?**

A. 절대 불가합니다. 유예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규 포장재가 생산 및 입고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또는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올바른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을 유통해야 하는 '조기 정상화 통보 의무'가 부여됩니다. 신규 포장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기존 포장재를 계속 혼용하여 사용하다 현장 점검 등에서 적발될 경우 엄격히 단속 조치됩니다.

**Q7. 부여받은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승인된 유예기간 내에 재고를 전량 소진하고 신규 포장재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발생한 급격한 소비 침체, 매출 감소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객관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진이 지연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